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제1733호
- 다. 제출일자: 2020. 8. 12.
- 라. 회부일자: 2020. 8. 21.

2. 제 안 사 유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을 조정하고 같은 날 여러 운행제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며, 시민의 구제권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는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나. 조례와 타 법령(「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혹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정한 각각의 운행제한 조치를 동일한 날 위반한 자동차가 타 법령에 따른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본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
(안 제5조제5항).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4.9~4.29) 결과: 의견 있음(1건)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현재 시행중인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이하 LEZ) 운행제한과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다른 운행제한과 동시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현재 LEZ와 녹색교통지역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3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등 총 4가지의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임.

LEZ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약 4만7천대가 녹색교통지역¹⁾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을 통행할 경우, 1회 경고를 시작으로 2회부터는 월 1회 20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하는 제도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160만대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경우 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 운행제한 제도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와 동일한 차량을 대상으로 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고, 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전역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임.

1) 종로구 8개동(삼청동, 청운효자동, 가회동, 사직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혜화동, 이화동), 중구 7개동(명동, 장충동, 소공동, 회현동, 필동, 을지로동, 광희동)

- 이러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들은 각각의 근거 법령과 운행제한 대상 차량, 제한기간 및 유예대상 등의 제도 시행 조건들이 상이한 관계로 노후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중복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동안에는 LEZ 운행제한을 실시하지 않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날에 다른 운행제한과 LEZ 운행제한 지역을 모두 통행한 경우, 후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제도 시행 전 계획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 하는 사안으로, 지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운행제한 제도는 한시 유예대상과 제외대상 등을 달리 설정하고 있어,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조례 개정 전·후 공해차량 등의 운행제한 제도 변경 사항〉

운행제한 구분		운행제한 기간	
		계절관리 기간(12~3월)	4월~11월
녹색교통지역		상시 시행(365일, 06~21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시행	시행(평일, 6~21시)
	계절관리제	시행(평일, 6~21시)	미시행
LEZ 운행제한	개정 전	시행(365일, 24시간)	
	개정 후	미시행	시행 (과태료 중복 부과 ×)

〈서울시 공해차량 등의 운행제한 제도 현황 비교〉

구분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市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市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고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市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市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운행 제한 대상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규모	4.7만대 (서울 4.0만대, 인천 4,879대, 경기 1,736대)	전국 116만대 ※ '21.1월부터 160만대	전국 160만대 (수도권 39만대, 서울 10만대)	전국 116만대 ※ '21.1월부터 160만대
시행 시기	2012~	2019.12.1.~	2019. 2.15.~	2020.12.1.~
제한 시간	24시간 (365일)	06시 ~21시 (365일)	06시 ~21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토·공휴일 제외	06시 ~21시 (매년 12월~3월) ※ 토·공휴일 제외
제외 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좌동	좌동
한시 유예 대상	· 매년농도 10%이하 차량 (승용 2년, 화물 1년) · 장착 불가차량(1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2월까지 유예> · 장치 미개발 차량 (비상저감조치시 단속)	-	<~'20.12월까지 유예> · 장치미개발 차량
과태료	- 1회 경고, - 2회부터 월1회 20만원 (최대 20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부과 주체	차량 등록지 지자체 (차량공해저감과)	서울시 (교통지도과)	최초 적발 지자체 (차량공해저감과)	최초 적발 지자체 (차량공해저감과)